

PATENT ASSIGNMENT COVER SHEET

Electronic Version v1.1
 Stylesheet Version v1.2

EPAS ID: PAT8212310

SUBMISSION TYPE:	NEW ASSIGNMENT	
NATURE OF CONVEYANCE:	CHANGE OF NAME	
CONVEYING PARTY DATA		
	Name	Execution Date
	SEMICON LIGHT CO., LTD.	04/10/2023
RECEIVING PARTY DATA		
Name:	SL ENERGY CO., LTD.	
Street Address:	(GOMAE-DONG) 3RD FLOOR, 49 WONGOMAE-RO2BEON-GIL,	
Internal Address:	GIHEUNG-GU, YONGIN-SI,	
City:	GYEONGGI-DO	
State/Country:	KOREA, REPUBLIC OF	
PROPERTY NUMBERS Total: 1		
	Property Type	Number
	Application Number:	17870475
CORRESPONDENCE DATA		
Fax Number:		
<i>Correspondence will be sent to the e-mail address first;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using a fax number, if provided; if that is unsuccessful, it will be sent via US Mail.</i>		
Email:	kslefile@harnessip.com	
Correspondent Name:	HARNESS, DICKEY & PIERCE, PLC	
Address Line 1:	7700 BONHOMME, SUITE 400	
Address Line 4:	SAINT LOUIS, MISSOURI 63105	
ATTORNEY DOCKET NUMBER:	19038-000198-US-COA	
NAME OF SUBMITTER:	KISUK LEE	
SIGNATURE:	/Kisuk Lee/	
DATE SIGNED:	10/10/2023	
Total Attachments: 39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4.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5.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6.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7.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8.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9.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0.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1.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2.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3.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4.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5.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6.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7.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8.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19.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0.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1.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2.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3.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4.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5.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6.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7.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8.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29.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0.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1.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2.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3.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4.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5.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6.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7.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8.tif
source=000198uscoa_NameChange__#page39.tif

Certificate of Registry Information (including expungements) [for submission]

Registered No.	014571	
Registration No.	131111-0191004	
Name of company	SEMICONLIGHT CO., LTD.	June 10, 2008 Modified
		June 18, 2008 Registered
	SL VIONICS CO., LTD.	March 30, 2021 Modified
		April 2, 2021 Registered
	SL ENERGY CO., LTD.	March 29, 2023 Modified
		April 10, 2023 Registered
Head Office	3rd floor, 474 Gomae-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 .
		. .
	(Gomae-dong) 3rd Floor, 49 Wongomae-ro2beon-gil,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October 31, 2011 Street Address
		February 23, 2012 Registered

The following translation omitted

Date of Issuance : October 6 202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제출용]

등기번호	014571	
등록번호	1311111-0191004	
상 호	주식회사 세미콘라이트	2008.06.10 변경 2008.06.18 등기
	주식회사 엑스셀바이오닉스 (SL Vionics Co., Ltd.)	2021.03.30 변경 2021.04.02 등기
	주식회사 엑스셀에너지 (SL Energy Co., Ltd.)	2023.03.29 변경 2023.04.10 등기
본 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74번지 3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2번길 49, 3층(고매동)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2.02.23 등기
광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semiconligh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2.03.22 변경 2012.03.26 등기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홈페이지(www.slvionic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2021.03.30 변경 2021.04.02 등기
	회사의 광고는 인터넷홈페이지 (www.slenergy.kr)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2023.03.29 변경 2023.04.10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금 500 원	2012.06.26 변경 2012.06.27 등기
	금 100 원	2017.01.17 변경 2017.01.19 등기
	금 50 원	2020.01.14 변경 2020.01.14 등기
	금 10 원	2022.08.16 변경 2022.08.16 등기
	금 500 원	2020.01.14 변경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10304038331200002011032200137150451N001C11304E33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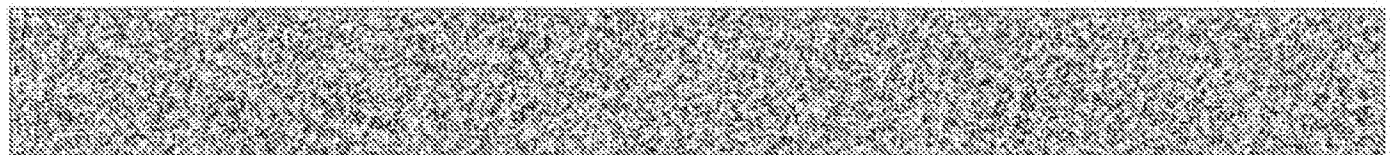
발급확인번호 5711-AAXF-CNBY

발행일 2023/10/06

등기번호	014571	
		2022.08.26 등기 2022.08.18 정정
금 100 원		2022.08.18 변경 2022.08.28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주	
50,000,000-주	2012.06.26 변경 2012.06.27 등기
1,000,000,000 주	2016.12.13 변경 2016.12.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12,720-주		
보통주식 112,720-주	금 563,6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30,518-주		2009.11.06 변경
보통주식 130,518-주	금 652,590,000-원	2009.11.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64,555-주		2009.12.30 변경
보통주식 156,006-주		2009.12.30 등기
상환권환우선주식 7,557-주	금 622,77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329,110-주		2011.11.03 변경
보통주식 313,996-주		2011.11.04 등기
우선주식 15,114-주	금 1,645,55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362,362-주		2012.02.23 변경
보통주식 347,248-주		2012.02.23 등기
우선주식 15,114-주	금 1,811,8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3,623,620-주		2012.06.26 변경
보통주식 3,472,480-주		2012.06.27 등기
우선주식 151,140-주	금 1,811,8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3,623,620-주		2014.06.05 변경
보통주식 3,623,620-주	금 1,811,810,000-원	2014.06.0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026,245-주		2014.10.31 변경
보통주식 4,026,245-주	금 2,013,122,500-원	2014.11.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121,425-주		2014.12.23 변경
보통주식 4,121,425-주	금 2,060,712,500-원	2014.12.2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128,225-주		2015.03.02 변경
보통주식 4,128,225-주	금 2,064,112,500-원	2015.03.1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200,000-주		2015.06.20 변경
보통주식 5,200,000-주	금 2,600,000,000-원	2015.06.2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202,500-주		2015.07.02 변경
보통주식 5,202,500-주	금 2,601,250,000-원	2015.07.03 등기



등기번호	014571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5,289,500 주		2015.07.17 변경
보통주식	5,289,500 주	금 2,604,750,000 원	2015.07.2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289,171 주		2016.06.21 변경
보통주식	5,289,171 주	금 2,640,685,500 원	2016.06.2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385,171 주		2016.08.23 변경
보통주식	5,385,171 주	금 2,692,585,500 원	2016.08.2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155,365 주		2016.09.10 변경
보통주식	6,155,365 주	금 3,077,682,500 원	2016.09.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125,200 주		2016.09.13 변경
보통주식	9,125,200 주	금 4,562,600,000 원	2016.09.2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5,626,000 주		2017.01.17 변경
보통주식	45,626,000 주	금 4,562,600,000 원	2017.01.1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6,491,193 주		2018.01.23 변경
보통주식	46,491,193 주	금 4,640,119,300 원	2018.01.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8,975,295 주		2018.01.30 변경
보통주식	48,975,295 주	금 4,897,529,500 원	2018.01.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0,296,940 주		2018.01.30 변경
보통주식	50,296,940 주	금 5,029,694,000 원	2018.02.0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6,254,386 주		2018.03.30 변경
보통주식	56,254,386 주	금 5,625,438,600 원	2018.04.0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58,939,854 주		2018.04.25 변경
보통주식	58,939,854 주	금 5,893,985,400 원	2018.04.2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0,490,240 주		2018.05.11 변경
보통주식	60,490,240 주	금 6,049,024,000 원	2018.05.1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2,050,302 주		2018.05.18 변경
보통주식	62,050,302 주	금 6,205,030,200 원	2018.05.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3,986,339 주		2018.06.29 변경
보통주식	63,986,339 주	금 6,398,633,900 원	2018.07.0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3,780,620 주		2018.07.16 변경
보통주식	63,780,620 주	금 6,378,062,000 원	2018.07.1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5,340,682 주		2018.07.23 변경
보통주식	65,340,682 주	금 6,534,068,200 원	2018.07.2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6,015,445 주		2019.06.25 변경
보통주식	66,015,445 주	금 6,601,544,500 원	2019.06.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6,650,208 주		2019.06.28 변경
보통주식	66,650,208 주	금 6,669,030,800 원	2019.07.0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2,628,128 주		2019.07.19 변경
보통주식	72,628,128 주	금 7,262,812,800 원	2019.07.2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4,066,026 주		2019.08.05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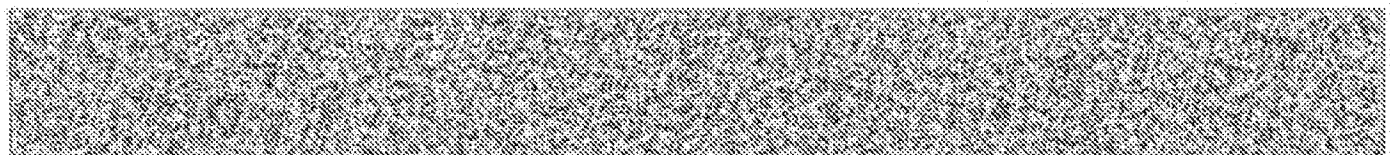
등기번호	014571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보통주식	74,656,036 주	금 7,466,603,600 원	2019.08.0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83,729,901 주		2019.09.17 변경
보통주식	83,729,901 주	금 8,372,990,100 원	2019.09.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6,745,980 주		2020.01.14 변경
보통주식	16,745,980 주	금 8,372,990,000 원	2020.01.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7,814,119 주		2020.01.16 변경
보통주식	17,814,119 주	금 8,907,059,500 원	2020.01.2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9,814,119 주		2020.04.03 변경
보통주식	19,814,119 주	금 9,907,059,500 원	2020.04.0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6,632,293 주		2020.04.10 변경
보통주식	26,632,293 주	금 13,316,146,500 원	2020.04.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8,102,881 주		2020.09.30 변경
보통주식	28,102,881 주	금 14,051,440,500 원	2020.10.0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5,631,110 주		2020.11.13 변경
보통주식	35,631,110 주	금 17,815,555,000 원	2020.11.17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9,626,913 주		2020.12.12 변경
보통주식	39,626,913 주	금 19,913,456,500 원	2020.12.1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1,352,913 주		2021.05.15 변경
보통주식	41,352,913 주	금 20,676,456,500 원	2021.05.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2,063,813 주		2021.08.30 변경
보통주식	42,063,813 주	금 21,031,906,500 원	2021.08.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5,796,037 주		2021.10.20 변경
보통주식	45,796,037 주	금 22,896,018,500 원	2021.10.2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579,603 주		2021.11.25 변경
보통주식	4,579,603 주	금 2,289,801,500 원	2021.11.25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499,535 주		2022.01.18 변경
보통주식	7,499,535 주	금 3,749,767,500 원	2022.01.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882,731 주		2022.04.19 변경
보통주식	7,882,731 주	금 3,941,365,500 원	2022.04.20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412,581 주		2022.04.28 변경
보통주식	9,412,581 주	금 4,706,290,500 원	2022.04.2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062,905 주		2022.06.18 변경
보통주식	47,062,905 주	금 4,706,290,500 원	2022.08.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9,412,581 주		2022.04.28 변경
보통주식	9,412,581 주	금 4,706,290,500 원	2022.08.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0,164,005 주		2022.08.18 변경
보통주식	10,164,005 주	금 5,082,002,500 원	2022.08.11 변경
발행주식의 총수	13,167,557 주		2022.08.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3,167,557 주		2022.08.12 변경

등기번호	014571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보통주식	13,187,567 주	금 6,583,776,500 원	2022.08.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3,282,829 주		2022.08.16 변경
보통주식	13,282,829 주	금 6,641,414,500 원	2022.08.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66,414,145 주		2022.08.18 변경
보통주식	66,414,145 주	금 6,641,414,500 원	2022.08.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3,582,603 주		2022.12.21 변경
보통주식	73,582,603 주	금 7,358,260,300 원	2022.12.21 등기

목	제		
1. 태양전지용 셀 및 모듈 도, 소매업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태양전지용 셀 및 모듈 무역업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태양전지용 셀 및 모듈 컨설팅업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태양전지용 셀 및 모듈 제조업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태양전지용 셀 및 모듈 연구개발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LED류일체 개발, 제조, 판매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LED Epifafer 및 chip 설계, 개발, 제조, 판매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조명장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전자부품 제조업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2016.08.02	삭제	2016.08.04 등기>
1. LED류 일체 개발, 제조, 판매	<2016.08.02	추가	2016.08.04 등기>
2. LED Epifafer 및 chip 설계, 개발, 제조, 판매	<2016.08.02	추가	2016.08.04 등기>
3. 조명장치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2016.08.02	추가	2016.08.04 등기>
4. 전자부품 제조업	<2016.08.02	추가	2016.08.04 등기>
5. 태양전지용 셀 및 모듈 컨설팅업	<2016.08.02	추가	2016.08.04 등기>
6. 전자, 전기, 화장품, 식품관련 수출입 업무 및 종래 무역업무 일체	<2016.08.02	추가	2016.08.04 등기>
7. 기타 위에 관련된 수출입 업무 및 무역업	<2016.08.02	추가	2016.08.04 등기>
8.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2016.08.02	추가	2016.08.04 등기>
	<2016.12.13	삭제	2016.12.14 등기>
8. 카지노 관련 서비스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8.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업 기타 통신판매사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9. 이일리제(Comp.)관리 및 판매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9.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10. 데이터 관리 및 판매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0. 도, 소매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11. 전자자금 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1.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2020.07.23	삭제	2020.07.31 등기>
12. 환전 및 외환관련 서비스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2. 신약, 유전자 치료제 및 각종 생물 및 의약품의 개발 및 무역업			



등기번호	014371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2020.07.23 삭제 2020.07.31 등기>
13. 공연·전시·기획 및 부대서비스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3. 영상사업, 분석, 통계, 자료, 대행서비스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2020.07.23 삭제 2020.07.31 등기>	
14.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업 기타 통신판매사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4. 기술매관, 판매 및 대행서비스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11. 기술이전, 판매 및 대행서비스업	<2020.07.23 변경 2020.07.31 등기>	
15.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 투자원사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5. 국, 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건설, 공사, 임대, 분양, 시행 및 용역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12. 국, 내외 부동산 매매, 투자, 건설, 공사, 임대, 분양, 시행 및 용역업	<2020.07.23 변경 2020.07.31 등기>	
16.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를 포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6.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 BIF 등)에 대한 투자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13. 국, 내외 상장주식 또는 기타 법인의 지분 및 채권(CB, BIF 등)에 대한 투자업	<2020.07.23 변경 2020.07.31 등기>	
17.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7.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업무시설, 설비, 전산 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투자 및 지원사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14.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업무시설, 설비, 전산 시스템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투자 및 지원사업	<2020.07.23 변경 2020.07.31 등기>	
18.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8. 자회사(자회사, 손자회사를 포함) 및 기타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CB, BIF 등)을 소유함으 로써 자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지배, 경영제고,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15. 자회사(자회사, 손자회사를 포함) 및 기타법인에 대한 지분 및 채권(CB, BIF 등)을 소유함으 로써 자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지배, 경영제고,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020.07.23 변경 2020.07.31 등기>	
19. 도, 소매업(자호 관련 도, 소매)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19. 위 자호에 관련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일체	<2019.08.02 변경 2019.08.21 등기>	
16. 위 자호에 관련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일체	<2020.07.23 변경 2020.07.31 등기>	
16.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 및 수출업, 및 건강(health care)관련사업	<2021.10.15 변경 2021.10.20 등기>	
16.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0.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등기번호	014571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21.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2016.12.13	추가	2016.12.14	등기>
21.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18.05.25	변경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22. 세포자궁 및 배양 용역위탁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23. 세포 및 조직은행(가공, 보관 및 운영사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24. 동물줄기세포 보관사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25. 동물복제사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26. 배아간세포(Embryonic stem cell)를 이용한 복제세포 및 조직은행 설립, 운영사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27. 간세포(stem cell)를 이용한 질병치료 기술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28. 질환동물 대량복제 시스템 개발판매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29. 약물관련 전신허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0. 의료사업기기 판매 및 제조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1. 의학용 개발, 제조, 판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2. 의학용의 인화자, 동물원사, 임상실험, 제조용역위탁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3. 세포치료제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4. 난치성 질병의 질병 진단 기술 개발, 치료방법, 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5. 미래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저장 및 운영사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6. 미생물로부터의 유효물질을 탐색 및 활용사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7.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등기번호	014571
------	--------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8. 물거세포 연구 및 분리장비 제조 및 치료제 판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39. 생명과학 관련 사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0. 헬스케어 관련 사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1. 화학약품(유독물포함)제조 및 도·소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2. 화학제품 및 환경산업에 관련된 컨설팅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3. 폐기물 재활용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4. 폐기물 수집처리 및 운반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5. 가파비료 및 필수화학물 제조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6. 정밀화학제품 제조판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7. 생물학적 제제 제조 및 유통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8. 플라스티크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49. 바이오플라스티크 그 관련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50. 기타 위생 부대되는 사업 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2018.05.25	추가	2018.06.08	등기>
	<2019.08.02	삭제	2019.08.21	등기>
17. 의약품, 의약부외품, 수의약품(獸醫藥品), 화장품,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17. 유지가공업, 합성수지 제조 및 가공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18. 신약, 신기술 연구기술개발, 임상시험, 영위업제 등에 대한 자본투자 또는 공동사업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18. 기계제작, 제조, 판매 및 수리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19. 의,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영위업제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또는 공동사업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19. 자동차 설비 제작 및 수출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0.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업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20.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1. 유지가공업, 합성수지 제조 및 가공업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등기번호	014571		
21. 의류 제조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2. 자재제조, 제조, 판매 및 수리업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23. 패션잡화 제조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3. 자동차 실버 제작 및 수출업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23. 의류 및 패션잡화 무역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4.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판매업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24. 의류 및 패션잡화 도, 소매 관련 용역 및 위, 수탁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5. 식음제품, 화학제품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25. 광고 대행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6.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업체	<2021.10.15 추가	2021.10.20	등기>
	<2022.03.31 삭제	2022.04.11	등기>
26. 의류 제조업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26. 마케팅 자문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7. 패션잡화 제조업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27. 이차전지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8. 의류 및 패션잡화 무역업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28. 전력저장용 Battery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연구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29. 의류 및 패션잡화 도, 소매 관련 용역 및 위, 수탁업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29. 도시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30. 광고 대행업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30. 화학제약 산업 폐축매에서 금속 회수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31. 마케팅 자문업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31. 자동차산업 폐축매에서 금속 회수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32.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업체	<2022.03.31 추가	2022.04.11	등기>
32. 비철금속 1차 제련 및 정련	<2022.08.01 변경	2022.08.04	등기>
33. 폐전지 재활용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34.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35. 폐기물 수집, 처리, 이용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36. 광물자원개발 및 판매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37. 전자 및 전기산업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에서 금속 회수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38. 회수된 금속에서 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3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40.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건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건설업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41. 식음제품, 가스 윤활기유, 윤활유, 그리스, 화학제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수출, 저장 및			

등기번호	014571
대대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42. 배관자재 및 기타자재 판매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43. 석유화학제품 판매 및 알선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44. 석유화학제품 및 배관자재 등 회사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제품등의 수출입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45. 석유화학 제품 및 원료등의 저장탱크 임대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46. 원유 및 경유의 각 제품의 수출입업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47.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일체	<2022.08.01 추가 2022.08.04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감사 김병호 630621-----			
2007 년 07 월 04 일 취임	2007 년 07 월 04 일 등기		
2010 년 03 월 26 일 퇴임	2010 년 04 월 09 일 등기		
사내이사 유태경 600308-----			
2009 년 03 월 18 일 취임	2009 년 03 월 17 일 등기		
2012 년 03 월 22 일 퇴임	2012 년 03 월 26 일 등기		
대표이사 유태경 6003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02 청구빌라 502-201			
2009 년 03 월 18 일 취임	2009 년 03 월 17 일 등기		
2011 년 09 월 01 일 사임	2011 년 09 월 02 일 등기		
사내이사 박은현 710520-----			
2009 년 05 월 15 일 취임	2009 년 05 월 22 일 등기		
2012 년 03 월 22 일 사임	2012 년 03 월 26 일 등기		
대표이사 박은현 7105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67 대화마을 대우빌라 802-405			
2009 년 05 월 15 일 취임	2009 년 05 월 22 일 등기		
대표이사 박은현 7105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2 파크타운 113-1406			
2009 년 12 월 18 일 주소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등기		
2012 년 03 월 22 일 사임	2012 년 03 월 26 일 등기		
거하비상무이사 성규동 570920-----			
2009 년 06 월 29 일 취임	2009 년 07 월 10 일 등기		
2010 년 05 월 31 일 사임	2010 년 06 월 03 일 등기		
감사 정언호 691001-----			
2010 년 03 월 26 일 취임	2010 년 04 월 09 일 등기		
2010 년 06 월 09 일 사임	2010 년 06 월 10 일 등기		
사내이사 장훈철 710130-----			
2010 년 06 월 09 일 취임	2010 년 06 월 10 일 등기		
2011 년 08 월 23 일 사임	2011 년 08 월 24 일 등기		
사내이사 김영철 730602-----			
2010 년 06 월 09 일 취임	2010 년 06 월 10 일 등기		
2011 년 08 월 23 일 사임	2011 년 08 월 24 일 등기		
사외이사 이광희 710812-----			
2010 년 06 월 09 일 취임	2010 년 06 월 10 일 등기		
2011 년 08 월 23 일 사임	2011 년 08 월 24 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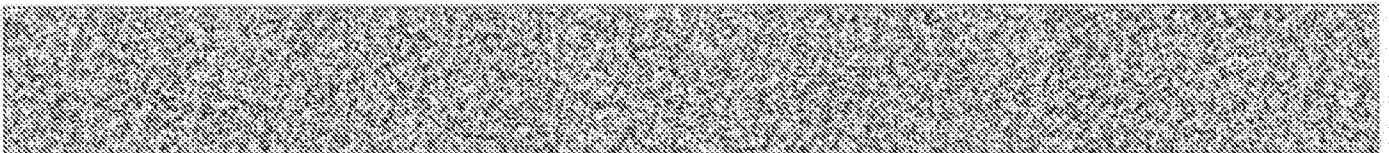


등기번호	014571
사회이사 유희종 520781-----	
2010 년 06 월 09 일 취임	2010 년 06 월 10 일 등기
2013 년 06 월 09 일 퇴임	2013 년 06 월 11 일 등기
감사 유재민 580419-----	
2010 년 06 월 09 일 취임	2010 년 06 월 10 일 등기
2011 년 08 월 23 일 사임	2011 년 08 월 24 일 등기
감사 남종호 570218-----	
2011 년 11 월 03 일 취임	2011 년 11 월 04 일 등기
2014 년 03 월 20 일 중임	2014 년 03 월 28 일 등기
2015 년 03 월 03 일 사임	2015 년 03 월 13 일 등기
사내이사 권수근 720630-----	
2012 년 03 월 22 일 취임	2012 년 03 월 26 일 등기
2015 년 03 월 22 일 중임	2015 년 03 월 24 일 등기
2016 년 08 월 02 일 사임	2016 년 08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유재경 600308-----	
2012 년 03 월 22 일 취임	2012 년 03 월 26 일 등기
2014 년 04 월 14 일 사임	2014 년 04 월 15 일 등기
사내이사 박은현 710520-----	
2012 년 03 월 22 일 취임	2012 년 03 월 26 일 등기
2015 년 03 월 22 일 중임	2015 년 03 월 24 일 등기
2016 년 08 월 02 일 사임	2016 년 08 월 04 일 등기
대표이사 박은현 7105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113동 1406호(수내동, 파크하운)	
2012 년 03 월 22 일 취임	2012 년 03 월 26 일 등기
2015 년 03 월 22 일 중임	2015 년 03 월 24 일 등기
2016 년 08 월 02 일 사임	2016 년 08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이효상 601018-----	
2013 년 06 월 09 일 취임	2013 년 06 월 11 일 등기
사회이사 이효상 601018-----	
2013 년 06 월 09 일 신청착오	2013 년 06 월 17 일 등기
2015 년 03 월 03 일 사임	2015 년 03 월 13 일 등기
사회이사 이동호 600721-----	
2015 년 03 월 03 일 취임	2015 년 03 월 13 일 등기
2016 년 08 월 02 일 사임	2016 년 08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허봉중 630624-----	
2015 년 03 월 03 일 취임	2015 년 03 월 13 일 등기
2016 년 08 월 02 일 사임	2016 년 08 월 04 일 등기
감사 이정주 630306-----	
2015 년 03 월 03 일 취임	2015 년 03 월 13 일 등기
2016 년 08 월 02 일 사임	2016 년 08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김영권 601002-----	
2016 년 08 월 02 일 취임	2016 년 08 월 04 일 등기

동기번호	014571
2019 년 08 월 02 일 취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대표이사 김영권 6910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5, 707동 1203호(삼평동, 북동마을)	
2016 년 08 월 02 일 취임	2016 년 08 월 04 일 동기
대표이사 김영권 69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118, 2동 505호(도곡동, 우성캐피타199-)	
2017 년 02 월 06 일 주소변경	2017 년 07 월 11 일 동기
2019 년 01 월 24 일 사임	2019 년 02 월 11 일 동기
사내이사 이현철 660717-*****	
2016 년 08 월 02 일 취임	2016 년 08 월 04 일 동기
2016 년 08 월 25 일 사임	2016 년 09 월 02 일 동기
사내이사 정동상 670793-*****	
2016 년 08 월 02 일 취임	2016 년 08 월 04 일 동기
2016 년 08 월 25 일 사임	2016 년 09 월 02 일 동기
사내이사 권순규 660801-*****	
2016 년 08 월 02 일 취임	2016 년 08 월 04 일 동기
2018 년 10 월 05 일 사임	2018 년 10 월 19 일 동기
사외이사 권영호 680704-*****	
2016 년 08 월 02 일 취임	2016 년 08 월 04 일 동기
2019 년 08 월 02 일 퇴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감사 이성민 660714-*****	
2016 년 08 월 02 일 취임	2016 년 08 월 04 일 동기
2016 년 08 월 25 일 사임	2016 년 08 월 29 일 동기
감사 김선관 720630-*****	
2016 년 08 월 02 일 취임	2016 년 08 월 04 일 동기
2018 년 01 월 23 일 사임	2018 년 02 월 01 일 동기
사내이사 정훈철 710130-*****	
2016 년 12 월 13 일 취임	2016 년 12 월 14 일 동기
2018 년 03 월 28 일 사임	2018 년 03 월 28 일 동기
감사 한승호 730924-*****	
2016 년 12 월 13 일 취임	2016 년 12 월 14 일 동기
2019 년 03 월 28 일 중임	2019 년 04 월 11 일 동기
2019 년 08 월 02 일 사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사내이사 박은현 710620-*****	
2018 년 03 월 29 일 취임	2018 년 04 월 05 일 동기
2019 년 12 월 27 일 사임	2020 년 01 월 08 일 동기
사내이사 김현욱 741125-*****	
2018 년 10 월 05 일 취임	2018 년 10 월 19 일 동기
2019 년 08 월 02 일 사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사외이사 최승현 751024-*****	
2018 년 10 월 05 일 취임	2018 년 10 월 19 일 동기
2019 년 03 월 28 일 사임	2019 년 04 월 11 일 동기

동기번호	014571
대표이사 박은현 7105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48, 113동 1406호(수내동, 파크라운)	
2019 년 01 월 29 일 취임	2019 년 02 월 11 일 동기
2019 년 08 월 05 일 사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사회이사 이광훈 660717-----	
2019 년 03 월 28 일 취임	2019 년 04 월 11 일 동기
2019 년 12 월 27 일 해임	2020 년 01 월 08 일 동기
사내이사 이광재 720509-----	
2019 년 03 월 28 일 취임	2019 년 04 월 11 일 동기
2019 년 08 월 02 일 사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감사 문형식 761019-----	
2019 년 03 월 28 일 취임	2019 년 04 월 11 일 동기
2022 년 03 월 31 일 종임	2022 년 04 월 11 일 동기
2023 년 03 월 29 일 사임	2023 년 04 월 10 일 동기
사내이사 박일홍 710519-----	
2019 년 08 월 02 일 취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2022 년 03 월 31 일 사임	2022 년 04 월 11 일 동기
사내이사 김현도 760708-----	
2019 년 08 월 02 일 취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2020 년 08 월 10 일 사임	2020 년 08 월 24 일 동기
사회이사 은영두 770508-----	
2019 년 08 월 02 일 취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2019 년 10 월 31 일 사임	2019 년 11 월 04 일 동기
감사 양재훈 840216-----	
2019 년 08 월 02 일 취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2021 년 03 월 30 일 사임	2021 년 04 월 02 일 동기
대표이사 박일홍 7105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71동 1002호(잠실동, 잠실엘스)	
2019 년 08 월 05 일 취임	2019 년 08 월 21 일 동기
대표이사 박일홍 710519----- 경기도 의왕시 장안중앙로 23, 204동 1703호(삼동, 의왕푸르지오 프로젝츨볼파크)	
2020 년 12 월 08 일 주소변경	2020 년 12 월 16 일 동기
대표이사 박일홍 7105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64, 114동 3101호(개포동, 개포래미안 프로젝트)	
2021 년 08 월 10 일 주소변경	2021 년 08 월 23 일 동기
2022 년 03 월 31 일 사임	2022 년 04 월 11 일 동기
사내이사 은영두 770508-----	
2019 년 12 월 27 일 취임	2020 년 01 월 08 일 동기
2022 년 03 월 31 일 사임	2022 년 04 월 11 일 동기
사회이사 임종식 790329-----	
2019 년 12 월 27 일 취임	2020 년 01 월 08 일 동기
2020 년 09 월 24 일 사임	2020 년 10 월 07 일 동기

등기번호	014571
사내이사 서두용 581209-***** 2020 년 09 월 24 일 취임 2020 년 10 월 07 일 등기 2023 년 03 월 29 일 사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사내이사 손성권 670113-***** 2020 년 09 월 24 일 취임 2020 년 10 월 07 일 등기 2023 년 03 월 29 일 사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대표이사 손성권 6701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43-25, 103동 401호(월계동, 첨단선철아파트) 2020 년 09 월 24 일 취임 2020 년 10 월 07 일 등기 대표이사 손성권 6701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코엑로80길 99, 516동 1101호(상일동, 코엑스 트윈아아파트) 2022 년 05 월 30 일 주소변경 2022 년 12 월 21 일 등기 2023 년 03 월 29 일 사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사내이사 박일홍 710519-***** 2022 년 03 월 31 일 취임 2023 년 04 월 11 일 등기 2023 년 03 월 29 일 사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대표이사 박일홍 71051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64, 114동 3101호(개포동, 개포래피안 포퍼스트) 2022 년 03 월 31 일 취임 2022 년 04 월 11 일 등기 대표이사 박일홍 7105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8길 3, 1401호(아도이동) 2022 년 05 월 27 일 주소변경 2022 년 06 월 02 일 등기 대표이사 박일홍 710519-*****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교분로9길 50, 4층(잠실동) 2022 년 09 월 29 일 주소변경 2022 년 10 월 12 일 등기 대표이사 박일홍 710519-*****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교분로7길 16-15, 2층(잠실동) 2022 년 11 월 24 일 주소변경 2022 년 12 월 21 일 등기 2023 년 03 월 29 일 사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거하비상무이사 손영주 770506-***** 2022 년 03 월 31 일 취임 2022 년 04 월 11 일 등기 2023 년 03 월 29 일 사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사내이사 양규용 620622-***** 2023 년 03 월 29 일 취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대표이사 양규용 620622-***** 전라남도 여수시 여동2로 54-26, 103동 204호(문수동, 코아루수아파트) 2023 년 03 월 29 일 취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사내이사 박영복 710121-***** 2023 년 03 월 29 일 취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사외이사 김노은 890209-***** 2023 년 03 월 29 일 취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사외이사 강문혁 810530-***** 2023 년 03 월 29 일 취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감사 박경민 770101-***** 2023 년 03 월 29 일 취임 2023 년 04 월 10 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발행주식의 내용

(우선적 권리행사여 관한 사항)

- 1) 신주는 피투자기업이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다른 주식에 우선하여 이익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게 된다.
- 2) 본 계약에 의해서 발행되는 신주는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한 해의 회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3) 신주의 회계이익의 배당률은 영업연도별로 액면가의 1%이다.
- 4) 투자기업이 제3항의 회계이익의 배당율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 경우 회계이익의 배당율과 현실의 배당률과의 차이액 상당한 액수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누락하여 배당하여야 하고, 투자자와의 별개의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이러한 누락과정은 계속된다.
- 5) 투자기업이 보통주의 배당율을 회계이익의 배당률보다 높게 정한 영업연도에는 보통주의 배당률과 회계이익의 배당률의 차이액 상당한 비율만큼 신주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익을 배당하여야 한다.
- 6) 투자기업이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신주의 주주는 신주의 인수자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한도까지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액면가에 대한 청산금의 비율이 보통주가 신주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에는 신주의 주주는 그 차이액 상응하여 추가적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에 관한 사항)

- 1) 투자기업은 투자자가 서면동의하는 경우와 현재의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하여 신주를 소각할 수 있다. 상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금액은 신주의 인수자액에 연복리 2%의 이자금을 가산한 금액에서 미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환기간은 신주의 발행일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 투자기업이 투자자에게 상환금액을 지급하기 이전에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기업의 상환청구권은 소멸한다.
 3. 상환방법은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소각의 의사를 통지하고 상환일에 이르러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4. 상환하는 주식의 수는 신주의 전체의 수 이내에서 투자기업의 의사회의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5. 제 3항에 따른 상환기간에 투자기업이 상환자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의 일부나 전체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할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
- 2) 투자자는 투자기업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같이 투자기업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금액은 위 제1항 제1호와 같다.
 2. 상환기간은 본 상환주식 발행 후 3년 이후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이다. 단, 투자기업이 증권거래소 시장에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폐지되는 경우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은 소멸한다.
 3. 상환방법은 투자자가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상환을 요구받는 투자기업에게 상환청구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4. 상환하는 주식의 수는 투자자가 정하는 수량으로 한다.

통기번호

014571

(전환에 관한 사항)

1) 신주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 동안 신주의 주주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을 때면 그 7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전환청구가 있는 날부터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러나 피투자기업의 2010년 또는 2011년 순이익이 회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 사업계획서 (별첨)의 50%를 초과할 경우 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2)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대 보통주의 비율을 1 대 1로 하나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피투자기업이 본 신주의 발행 이후 신주의 인수가격의 이하의 가격으로 발행자격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도 동일하게 하할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4)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text{기발행주식수} \times \text{조정전 전환가격})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5) 전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8조 내지 제351조의 정함에 따른다.

6)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이 이루어진 사업년도와 직전 사업년도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또한, 보통주로 전환함과 동시에 우선주에 우선 분배된 누적이익배당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2014 년 06 월 05 일 감소 2014 년 06 월 09 일 동기

1. 발행주식의 내용

(기타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신주는 우선주의 상태에서 다른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 1의결권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전환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보통주의 주식수대로 '1주 1의결권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신주의 주주는 피투자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본 신주와 같은 종류와 내용을 가진 우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투자기업이 주식배당 또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정함에 따른 주식에 대한 배당청구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단, 부가자의 부가가치보다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9 년 12 월 30 일 변경 2009 년 12 월 30 일 동기

2014 년 06 월 05 일 감소 2014 년 06 월 09 일 동기

1. 전환주식의 전환

우선주 151,140주를 보통주 151,140주로 전환

2014 년 06 월 05 일 변경 2014 년 06 월 09 일 동기

1. 명의거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15 년 03 월 04 일 설치 2015 년 03 월 13 일 동기

1. 흡수합병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업로 274-13 (일하동) 주식회사 우성인더스트리를 합병

2022 년 08 월 04 일 동기

등기번호	014571
------	--------

전 환 사 제

(주) 세미콘라이트 제1회 무가정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 년 10 월 18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등기 >

제1회 무가정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8 년 05 월 18 일 일부전환 2018 년 05 월 18 일 등기 >

< 2019 년 09 월 17 일 전부전환 2019 년 09 월 18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이백억원(20,000,000,000)

< 2016 년 10 월 18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등기 >

금 일백육십만원(16,700,000,000)

< 2018 년 01 월 30 일 일부전환 2018 년 01 월 31 일 등기 >

금 일백사십만원(14,700,000,000)

< 2018 년 05 월 18 일 일부전환 2018 년 05 월 18 일 등기 >

금 일백삼십오만원(13,500,000,000)

< 2018 년 06 월 29 일 일부전환 2018 년 07 월 03 일 등기 >

금 일백십삼만원(11,500,000,000)

< 2018 년 07 월 23 일 일부전환 2018 년 07 월 23 일 등기 >

< 2019 년 09 월 17 일 전부전환 2019 년 09 월 18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일억원 2매, 금 삼억원 26매, 금 오억원 12매, 금 일십억원 6매 (총 4종, 46매)

< 2016 년 10 월 18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등기 >

< 2019 년 09 월 17 일 전부전환 2019 년 09 월 18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와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 2016 년 10 월 18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등기 >

< 2019 년 09 월 17 일 전부전환 2019 년 09 월 18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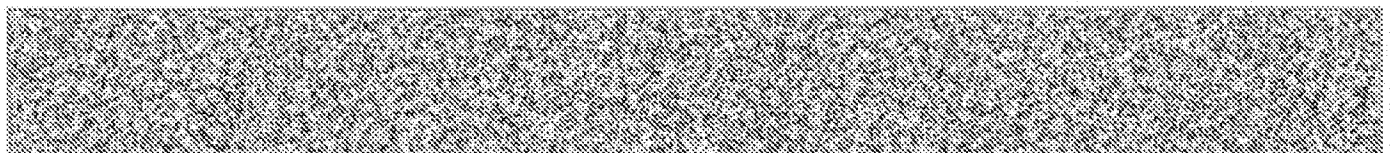
1. 전환가액 - 13,600원

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개월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상회 호가로 할당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3. 전환가액 (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정의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청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적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text{조정 후 전환가액} = \text{조정 전 전환가액} \times \{[A + (B \times C/D)] / (A + B)\}$$



등록번호

014571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B: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시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대주가(무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시유 발생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시세면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액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로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가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액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의 조정할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액 내의 다목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라프에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합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다 전환가액을 이다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액 내의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016 년 10 월 18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동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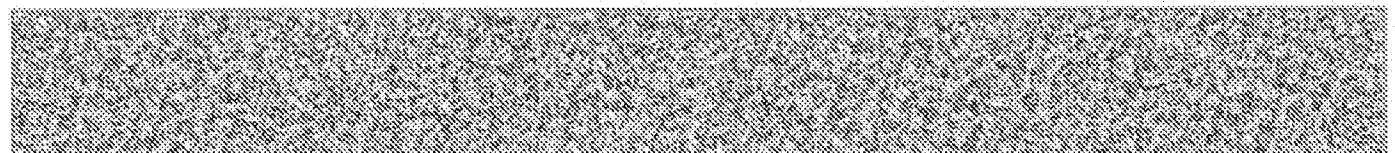
< 2019 년 09 월 17 일 전부전환 2019 년 09 월 18 일 동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퍼센트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잔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등기번호	014571
< 2016 년 10 월 18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등기 > < 2019 년 09 월 17 일 전부전환 2019 년 09 월 18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18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이 되는 날(2019년 09월 18일)까지로 한다.	
< 2016 년 10 월 18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등기 > < 2019 년 09 월 17 일 전부전환 2019 년 09 월 18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주식회사새터콘라이트 제2회 무자정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 년 12 월 29 일 발행 2017 년 01 월 03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26 일 전부상환 2019 년 05 월 07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3,200,000,000원 < 2016 년 12 월 29 일 발행 2017 년 01 월 03 일 등기 > 금3,000,000,000원 < 2018 년 01 월 30 일 일부전환 2018 년 02 월 05 일 등기 > 금2,000,000,000원 < 2018 년 07 월 16 일 일부전환 2018 년 07 월 17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26 일 전부상환 2019 년 05 월 07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일액원전31매,금오원만원전2매(총2종,33매) < 2016 년 12 월 29 일 발행 2017 년 01 월 03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26 일 전부상환 2019 년 05 월 07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의 권면금액과 100퍼센트 < 2016 년 12 월 29 일 발행 2017 년 01 월 03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26 일 전부상환 2019 년 05 월 07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가액9,170원 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 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 약일 3개월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소전 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3.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와 시가를 확정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분배금의 자본결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확정 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적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분배금의 자본결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times \{ (A + (B \times C/D)) / (A+B) \}$

A = 가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가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시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시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시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회주가(무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하의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이 액면가격 미만이면서 계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이미 조정할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격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 조정한 가격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격 내지 더욱더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본 시채 발행 후 1개월 그라고 매 1개월마다 만기일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출평균했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중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아—

2017년 01월 29일 2017년 02월 29일 2017년 03월 29일 2017년 04월 29일
2017년 05월 29일 2017년 06월 29일 2017년 07월 29일 2017년 08월 29일
2017년 09월 29일 2017년 10월 29일 2017년 11월 29일 2017년 12월 29일
2018년 01월 29일 2018년 02월 29일 2018년 03월 29일 2018년 04월 29일
2018년 05월 29일 2018년 06월 29일 2018년 07월 29일 2018년 08월 29일
2018년 09월 29일 2018년 10월 29일 2018년 11월 29일 2018년 12월 29일
2019년 01월 29일 2019년 02월 29일 2019년 03월 29일 2019년 04월 29일
2019년 05월 29일 2019년 06월 29일 2019년 07월 29일 2019년 08월 29일
2019년 09월 29일 2019년 10월 29일 2019년 11월 29일

1. 전환청구기간 : 본 시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12월 29일)로부터 전권 상환기

등기번호	014571
------	--------

일 1개월 전이 되는 날(2019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 2016 년 12 월 29 일 발행 2017 년 01 월 03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26 일 전부상환 2019 년 05 월 07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용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인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는 주식수의 100퍼센트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016 년 12 월 29 일 발행 2017 년 01 월 03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26 일 전부상환 2019 년 05 월 07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1.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12월 29일)로부터 일곱 상환기일 1개월 전이 되는 날(2019년 11월 29일)까지로 한다. < 2016 년 12 월 29 일 발행 2017 년 01 월 03 일 등기 > < 2019 년 04 월 26 일 전부상환 2019 년 05 월 07 일 등기 >
--

전 환 사 채 주식회사세더콘라이트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8 년 05 월 24 일 발행 2018 년 06 월 08 일 등기 > < 2020 년 04 월 10 일 전부전환 2020 년 04 월 14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 < 2018 년 05 월 24 일 발행 2018 년 06 월 08 일 등기 > 금 팔십구억원(8,900,000,000) < 2019 년 08 월 05 일 일부전환 2019 년 08 월 06 일 등기 > 금 육십억원(6,000,000,000) < 2020 년 01 월 16 일 일부전환 2020 년 01 월 20 일 등기 > < 2020 년 04 월 10 일 전부전환 2020 년 04 월 14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총 48매, 금 일십억원(1,000,000,000) 3매, 금 오억원(500,000,000) 4매, 금 삼억원(300,000,000) 10매, 금 일억원(100,000,000) 28매, 금 오천만원(50,000,000) 4매 < 2018 년 05 월 24 일 발행 2018 년 06 월 08 일 등기 > < 2020 년 04 월 10 일 전부전환 2020 년 04 월 14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 2018 년 05 월 24 일 발행 2018 년 06 월 08 일 등기 > < 2020 년 04 월 10 일 전부전환 2020 년 04 월 14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가액 : 1,945원 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종가
--

일 3개월 전 가장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의 100퍼센트를 최초 전환가격으로 하며, 호가 단의 더 많은 상위 호가로 결산하여 전환가격이 액면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격으로 한다.

3. 전환가격(이하 "전환가격"이라 한다.)의 조정

가. 본 시책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확보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분배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확보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적 외의 전환가격의 조정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분배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times \frac{(A + (B \times (C/D)))}{(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와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시책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시책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시책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장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화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시책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격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과지 상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회의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장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이 액면가격 미만이면서 가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이다 조정할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격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 조정한 가격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격 내지 더욱되는 범도로 아래와 같이 본 시책 발행 후 1개월 크라고 해 1개월마다 만 기일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장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장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장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와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중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16조 제5항의 최저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아래~

2015년 06월 24일 2015년 06월 24일 2015년 07월 24일 2015년 06월 24일

특허번호	014571
------	--------

2018년 09월 24일 2018년 10월 24일 2018년 11월 24일 2018년 12월 24일
 2019년 01월 24일 2019년 02월 24일 2019년 03월 24일 2019년 04월 24일
 2019년 05월 24일 2019년 06월 24일 2019년 07월 24일 2019년 08월 24일
 2019년 09월 24일 2019년 10월 24일 2019년 11월 24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01월 24일 2020년 02월 24일 2020년 03월 24일 2020년 04월 24일
 2020년 05월 24일 2020년 06월 24일 2020년 07월 24일 2020년 08월 24일
 2020년 09월 24일 2020년 10월 24일 2020년 11월 24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01월 24일 2021년 02월 24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4월 24일

< 2018 년 05 월 24 일 발행 2018 년 06 월 08 일 동기 >

< 2020 년 04 월 10 일 전부전환 2020 년 04 월 14 일 동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각 사채 원면금액(2 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원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는 주식수의 100퍼센트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과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018 년 05 월 24 일 발행 2018 년 06 월 08 일 동기 >

< 2020 년 04 월 10 일 전부전환 2020 년 04 월 14 일 동기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5월 24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이 되는 날(2021년 04월 24일)까지로 한다.

< 2018 년 05 월 24 일 발행 2018 년 06 월 08 일 동기 >

< 2020 년 04 월 10 일 전부전환 2020 년 04 월 14 일 동기 >

전 환 사 채

(주) 세미콘라이트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통 사채 전환사채

< 2018 년 06 월 22 일 발행 2018 년 07 월 03 일 동기 >

< 2019 년 07 월 19 일 전부전환 2019 년 07 월 22 일 동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오십사억원 (5,400,000,000)

< 2018 년 06 월 22 일 발행 2018 년 07 월 03 일 동기 >

금 사십구억원 (4,900,000,000)

< 2019 년 06 월 25 일 일부전환 2019 년 06 월 28 일 동기 >

금 사십사억원 (4,400,000,000)

< 2019 년 06 월 28 일 일부전환 2019 년 07 월 01 일 동기 >

< 2019 년 07 월 19 일 전부전환 2019 년 07 월 22 일 동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총 26매 금 일십억원(1,000,000,000) 2매, 금 오억원(500,000,000) 2매, 금 삼억원(300,000,000) 1매, 금 일억원(100,000,000) 21매

< 2018 년 06 월 22 일 발행 2018 년 07 월 03 일 동기 >

< 2019 년 07 월 19 일 전부전환 2019 년 07 월 22 일 동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의 원면금액의 100퍼센트



등기번호	014571
------	--------

< 2018 년 06 월 22 일 발행 2018 년 07 월 03 일 등기 >

< 2019 년 07 월 19 일 전부전환 2019 년 07 월 22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가액 - 1,945원

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월요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소전환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결산하여 전환가액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3.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확보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분배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확보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액의 값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분배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A+(B×C/D)) / (A+B) }

A : 가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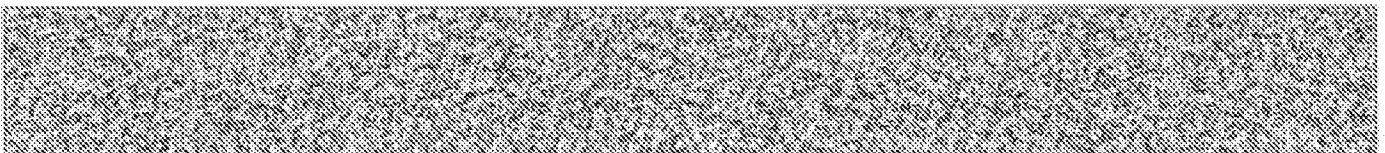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가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와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란 합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일 전의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면 시세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격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산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자의 상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 조정한 가격 이상으로 조정한다.



출구번호	014571
------	--------

라. 위 기록 내지 기록되는 정도로 아래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크리고 매 1개월마다 단 이월 1개월 경과지점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와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아 래—

2018년 07월 22일 2018년 06월 22일 2018년 09월 22일 2018년 10월 22일
2018년 11월 22일 2018년 12월 22일 2019년 01월 22일 2019년 02월 22일
2019년 03월 22일 2019년 04월 22일 2019년 05월 22일 2019년 06월 22일
2019년 07월 22일 2019년 08월 22일 2019년 09월 22일 2019년 10월 22일
2019년 11월 22일 2019년 12월 22일 2020년 01월 22일 2020년 02월 22일
2020년 03월 22일 2020년 04월 22일 2020년 05월 22일 2020년 06월 22일
2020년 07월 22일 2020년 08월 22일 2020년 09월 22일 2020년 10월 22일
2020년 11월 22일 2020년 12월 22일 2021년 01월 22일 2021년 02월 22일
2021년 03월 22일 2021년 04월 22일 2021년 05월 22일 2021년 06월 22일

< 2018 년 06 월 22 일 발행 2018 년 07 월 03 일 동기 >

< 2019 년 07 월 19 일 전부전환 2019 년 07 월 22 일 동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인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100퍼센트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018 년 06 월 22 일 발행 2018 년 07 월 03 일 동기 >

< 2019 년 07 월 19 일 전부전환 2019 년 07 월 22 일 동기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6월 22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이 되는 날(2021년 05월 22일)까지로 한다.

< 2018 년 06 월 22 일 발행 2018 년 07 월 03 일 동기 >

< 2019 년 07 월 19 일 전부전환 2019 년 07 월 22 일 동기 >

전 환 사 채

(주)세미콘라이트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9 년 11 월 12 일 발행 2019 년 11 월 25 일 동기 >

< 2020 년 11 월 13 일 전부전환 2020 년 11 월 17 일 동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육십억원(6,000,000,000)

< 2019 년 11 월 12 일 발행 2019 년 11 월 25 일 동기 >

< 2020 년 11 월 13 일 전부전환 2020 년 11 월 17 일 동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총 11매 금 일십억원(1,000,000,000) 5매, 금 오억원(500,000,000) 1매, 금 일억원(100,000,000) 5매

< 2019 년 11 월 12 일 발행 2019 년 11 월 25 일 동기 >

동기번호	014571
< 2020 년 11 월 13 일 전부전환 2020 년 11 월 17 일 동기 > 1. 각 전환사채의 남입금액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 2019 년 11 월 12 일 발행 2019 년 11 월 25 일 동기 > < 2020 년 11 월 13 일 전부전환 2020 년 11 월 17 일 동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가액 : 836원 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해당 월 8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결산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3.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액 발행회사와 시가를 확보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분배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확보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무채 다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분배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left[\frac{(A + (B \times C/D))}{(A + B)} \right]$ A : 가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가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에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의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권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격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의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	

등기번호	014571
------	--------

액 미만인면서 자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분할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라프 매 1개월마다 만지일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와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아 라—

2019년 12월 12일 2020년 01월 12일 2020년 02월 13일 2020년 03월 12일
2020년 04월 12일 2020년 05월 12일 2020년 06월 12일 2020년 07월 12일
2020년 08월 12일 2020년 09월 12일 2020년 10월 12일 2020년 11월 12일
2020년 12월 12일 2021년 01월 12일 2021년 02월 12일 2021년 03월 12일
2021년 04월 12일 2021년 05월 12일 2021년 06월 12일 2021년 07월 12일
2021년 08월 12일 2021년 09월 12일 2021년 10월 12일 2021년 11월 12일
2021년 12월 12일 2022년 01월 12일 2022년 02월 12일 2022년 03월 12일
2022년 04월 12일 2022년 05월 12일 2022년 06월 12일 2022년 07월 12일
2022년 08월 12일 2022년 09월 12일 2022년 10월 12일

< 2019 년 11 월 12 일 발행 2019 년 11 월 25 일 등기 >

< 2020 년 11 월 13 일 전부전환 2020 년 11 월 17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지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100퍼센트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019 년 11 월 12 일 발행 2019 년 11 월 25 일 등기 >

< 2020 년 11 월 13 일 전부전환 2020 년 11 월 17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12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이 되는 날(2022년 10월 12일)까지로 한다.

< 2019 년 11 월 12 일 발행 2019 년 11 월 25 일 등기 >

< 2020 년 11 월 13 일 전부전환 2020 년 11 월 17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주) 새미온라이프 제6회 무기정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20 년 08 월 27 일 발행 2020 년 09 월 10 일 등기 >

< 2022 년 04 월 19 일 전부전환 2022 년 04 월 20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5십만원(5,100,000,000)

< 2020 년 08 월 27 일 발행 2020 년 09 월 10 일 등기 >

금 4십만원(4,500,000,000)

< 2021 년 08 월 30 일 일부전환 2021 년 08 월 31 일 등기 >

등기번호	014371
------	--------

공-일십삼억오천만원(1,350,000,000)
 < 2021 년 10 월 20 일 일부전환 2021 년 10 월 25 일 동기 >
 < 2022 년 04 월 19 일 전부전환 2022 년 04 월 20 일 동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총 11매 공-오억원(500,000,000) 10매 공-일억원(100,000,000) 1매
 < 2020 년 08 월 27 일 발행 2020 년 09 월 10 일 동기 >
 < 2022 년 04 월 19 일 전부전환 2022 년 04 월 20 일 동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와-관련금액의-100퍼센트
 < 2020 년 08 월 27 일 발행 2020 년 09 월 10 일 동기 >
 < 2022 년 04 월 19 일 전부전환 2022 년 04 월 20 일 동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가격: 844원

2. "본사채"의 전환가격은 "본사채"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할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자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분주자로 하여, 기존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일단위 미만은 결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정액(정액원이 없는 경우는 납입원)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전환가격(이하 "전환가격"이라 한다)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와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통상 거래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의 착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실시와 함께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와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가가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환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의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하며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환 조정한 가격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목 내지 다 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 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와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의 산주의 환입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한정한다).

다. 위 가, 목 내지 라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조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의 미반은 결산한다.

—아 래—

2020년 09월 27일 2020년 10월 27일 2020년 11월 27일 2020년 12월 27일 2021년 01월 27일 2021년 02월 27일 2021년 03월 27일 2021년 04월 27일 2021년 05월 27일 2021년 06월 27일 2021년 07월 27일 2021년 08월 27일 2021년 09월 27일 2021년 10월 27일 2021년 11월 27일 2021년 12월 27일 2022년 01월 27일 2022년 02월 27일 2022년 03월 27일 2022년 04월 27일 2022년 05월 27일 2022년 06월 27일 2022년 07월 27일 2022년 08월 27일 2022년 09월 27일 2022년 10월 27일 2022년 11월 27일 2022년 12월 27일 2023년 01월 27일 2023년 02월 27일 2023년 03월 27일 2023년 04월 27일

2023년 05월 27일 2023년 06월 27일 2023년 07월 27일

< 2020년 08월 27일 발행 2020년 09월 10일 동기 >

< 2022년 04월 19일 전부전환 2022년 04월 20일 동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전자등록 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 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퍼센트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전환주식의 전자등록(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액면

등기번호	014571
------	--------

에 대한 해당기관 어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20 년 08 월 27 일 발행 2020 년 09 월 10 일 등기 >

< 2022 년 04 월 19 일 전부전환 2022 년 04 월 20 일 등기 >

1. 전환정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1년 08월 27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1개월 전이 되는 날(2023년 07월 27일)까지로 한다.

< 2020 년 08 월 27 일 발행 2020 년 09 월 10 일 등기 >

< 2022 년 04 월 19 일 전부전환 2022 년 04 월 20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주)에스엘바오니스 제8회 무가정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전환사채

< 2021 년 08 월 02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6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삼십억원(3,000,000,000)

< 2021 년 08 월 02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금-사억원(400,000,000)

< 2022 년 08 월 12 일 일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6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총 30매, 금-일억원(100,000,000) 30매

< 2021 년 08 월 02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6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의 관련금액의 100퍼센트

< 2021 년 08 월 02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6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가액 - 1,382원

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계약일 3개월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3.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분배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분배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times$ $\{ (A + (B \times C/D)) / (A+B) \}$

등기번호

014571

A+ 가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가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액(6)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또는 권리락주가(무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권의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하면 사채권자가 가할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이자 상응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준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다.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 조정한 가격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격 내지 다목하는 별도로 이해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하고 매 1개월마다 한 기일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021 년 08 월 02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6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정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퍼센트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021 년 08 월 02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6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02일)로부터 일괄 상환기일 1개월 전이 되는

등기번호	014571
------	--------

날(2024년 07월 02일)까지로 한다.

< 2021 년 08 월 02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6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전 환 사 재

(주)엑스엘바오너스 제7회 무가정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전환사채

< 2021 년 08 월 10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2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전환사채의 총액

금-일백억원(10,000,000,000)

< 2021 년 08 월 10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금-칠십오억원(7,500,000,000)

< 2022 년 08 월 11 일 일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2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총-19백, 금-십억원(1,000,000,000)-5백, 오억원(500,000,000)-9백, 금-일억원(100,000,000)-5백

< 2021 년 08 월 10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2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와 원천금액과 100퍼센트

< 2021 년 08 월 10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2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전환가액 : 1,382원

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산일 3개월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3.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확정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확정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공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원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frac{1}{1 + (B \times C / D)}$ / $(1 + B)$

A : 지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등기번호

01457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가) 또는 권리의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자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관해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다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액의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자산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과지 상습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자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조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의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자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다. 조정할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용만큼 상환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액 내지 다복하는 별도로 하에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크라고 매 1개월마다 만 1개월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동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동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동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중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복속한다는 정관 제13조 제5항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마. 본 조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021 년 08 월 10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2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 각 사채 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퍼센트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021 년 08 월 10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2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8월 10일)로부터 권금 상환거일 1개월 전이 되는 날(2024년 07월 10일)까지로 한다.

< 2021 년 08 월 10 일 발행 2021 년 08 월 23 일 등기 >

< 2022 년 08 월 12 일 전부전환 2022 년 08 월 26 일 등기 >

등기번호	014571
------	--------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회사-세이브라이프-제1회-무기행사-이런부-무보통-비불리행-신주인수권부사채

< 2016 년 10 월 17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동기 >

< 2018 년 05 월 11 일 전부행사 2018 년 05 월 11 일 동기 >

1. 본사채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임.

1. 주식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 총액

금-오십억원(5,000,000,000)

< 2016 년 10 월 17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동기 >

금-사십억원(4,000,000,000)

< 2018 년 01 월 23 일 일부행사 2018 년 01 월 31 일 동기 >

금-이십오억원(2,500,000,000)

< 2018 년 01 월 30 일 일부행사 2018 년 02 월 05 일 동기 >

금-이십억원(2,000,000,000)

< 2018 년 04 월 25 일 일부행사 2018 년 04 월 27 일 동기 >

< 2018 년 05 월 11 일 전부행사 2018 년 05 월 11 일 동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이십억원(100,000,000원)-15매, 일억원(100,000,000원)-20매

< 2016 년 10 월 17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동기 >

< 2018 년 05 월 11 일 전부행사 2018 년 05 월 11 일 동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사채-권면금액의-100퍼센트

< 2016 년 10 월 17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동기 >

< 2018 년 05 월 11 일 전부행사 2018 년 05 월 11 일 동기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금-오십억원(5,000,000,000)

< 2016 년 10 월 17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동기 >

금-사십억원(4,000,000,000)

< 2018 년 01 월 23 일 일부행사 2018 년 01 월 31 일 동기 >

금-이십오억원(2,500,000,000)

< 2018 년 01 월 30 일 일부행사 2018 년 02 월 05 일 동기 >

금-이십억원(2,000,000,000)

< 2018 년 04 월 25 일 일부행사 2018 년 04 월 27 일 동기 >

< 2018 년 05 월 11 일 전부행사 2018 년 05 월 11 일 동기 >

1.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1)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지명식 보통주

2) 행사비용: 각 사채의 권면금액(2배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에는 그 권면금액의 할산금액)을 아래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으로 나는 주식수의 10%를 행사주
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금 12,600원

4)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의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
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과-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실제일-3거래일 전-가중산술평균주가를 높은 가격을 가중주가

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 산정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행사가격이 액면가격(5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격으로 한다.

5)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조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분배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발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아래-

$$\text{조정 후 행사가격} = \text{조정 전 행사가격} \times ((A + (B \times C/D)) / (A+B))$$

A : 가발행 주식수

B : 신발행 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가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자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를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위 산식에서 "시가"의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 권리화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의 해면 변경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매정되었다하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해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인하여 본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분할 등 주식이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회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격")이 액면가격 미만이면 시가 전액 행사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며 조정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격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의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분할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회 조정한 가격 이상을 조정한다. 위 시가하회에 따른 행사가격 재조정(Refixing 조건) : 위 가, 독 내지 다, 독되는 별도로 "본

등기번호	014571
------	--------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와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중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소 행사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아-와-

2017년 01월 17일 2017년 04월 17일 2017년 07월 17일 2017년 10월 17일

2018년 01월 17일 2018년 04월 17일 2018년 07월 17일 2018년 10월 17일

2019년 01월 17일 2019년 04월 17일 2019년 07월 17일

아, 조정된 행사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여,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전달예정되며, 행사할 구 사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격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에 미달할 수 있다.

바,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결산하여,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액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을 액면가로 한다.

< 2016 년 10 월 17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등기 >

< 2018 년 05 월 11 일 전부행사 2018 년 05 월 11 일 등기 >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17일) 부의 원금상환거일 1개월 전이 되는 날(2019년 09월 17일)까지로 한다.

< 2016 년 10 월 17 일 발행 2016 년 10 월 31 일 등기 >

< 2018 년 05 월 11 일 전부행사 2018 년 05 월 11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회사는 임직원에게 성과평정의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2015 년 03 월 03 일 변경 2015 년 03 월 13 일 등기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등기번호

014571

< 2016 년 12 월 13 일 변경 2016 년 12 월 14 일 동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압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한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2)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15 년 03 월 03 일 변경 2015 년 03 월 13 일 동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과 뜻을 가진 임직원 및 벤처지원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 등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2)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위 1)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5 년 03 월 03 일 변경 2015 년 03 월 13 일 동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의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이를 부여한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5 년 03 월 03 일 변경 2015 년 03 월 13 일 동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1)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번호 0145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대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대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대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대수선택권의 행사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대수선택권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5 년 03 월 03 일 변경 2015 년 03 월 13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07 년 07 월 04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09년 10월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 분당트라벨리스 6층 640호(오)로부터 본절이전
 2009 년 11 월 10 일 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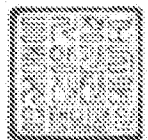
— 이 해 예 목 —

권합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불립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질·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3년 10월 0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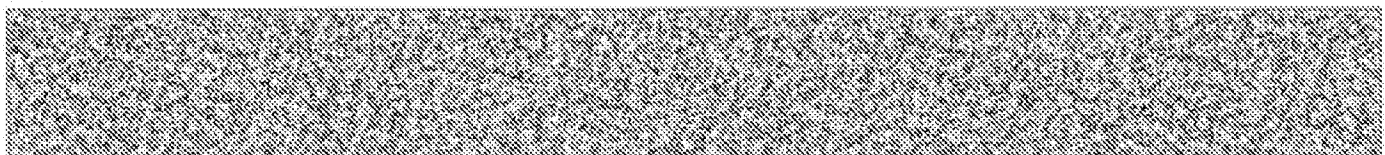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권산윤열 책임관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까지만 가능 합니다.



발행번호 11H204628331860020110320012715081N001C11284E351 1 발급확인번호 5711-AAXF-CNBY 발행일 2023/10/06